단 가 계 약 승 낙 사 항

[2020. 7. 1. 시행]

- 1. "경북권역재활병원"과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2. 일정기간 단가납품계약의 계약이행 예정량은 계약당시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추정량으로서 이행과정에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보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- 3.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을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내용상 분할납품이 가능하고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가. 물품의 제조 및 구입 : 0.8/1,000 나. 시설공사 : 0.5/1,000

다. 물품의 수리·가공·대여·용역: 1.3/1,000 라. 운송·보관 및 양곡가공: 2.5/1,000

- 4. "계약상대자"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'경북권역재활병원 회계규정'및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- 5. 제4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"계약상대자"는 계약불이행의 위약금으로 계약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(사전 별도 예치시 예치금액)을 현금으로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6. "계약상대자"는 계약이행완료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"경북권역재활병원"은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.

(대가지급계좌는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입점은행계좌로 개설하고, 입점은행계좌가 아닌 경우 송금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"계약상대자"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)

가. 의약품(조영제 포함): 6개월 이내 대가지급

나. 의약품 외 기타품목(용역, 공사 포함): 3개월 이내 대가지급

- 7. 동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에라 도 계약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8. "계약상대자"는 동 계약의 이행과정 또는 이행 완료후 공급물품의 불량 또는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상당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, 만일 그로 인한 소송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9. "경북권역재활병원"과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에 관한 관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 방의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대상물로 제공할 수 없다.
- 10. "계약상대자"는 판매하는 제품의 보험정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서면 및 유선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본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구

입단가가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심사기관에서 설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삭감될 경우 그 삭감액을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납부하여야 한다.

- 11. "계약상대자"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"계약상대자"는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"계약상대자"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12. 계약물품의 납품, 재고관리, 대금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요구할 때 "계약상대자"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가. 납품 및 재고관리

- 1) "계약상대자"는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서 집계된 동 계약물품의 평균소모량에 의거 연 간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안전재고량(병원 월평균 소모 량의 1/2 이상)을 병원이 지정하는 창고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2) 이 경우 병원 창고에 비치한 물품은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"계약상 대자"가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대여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관리하다.

나. 대금지급방법

- 1) 비치물품의 사용후 계약상대자의 납품거래명세서와 병원 사용부서의 검수보고서에 의거 납품대금을 지급한다.
- 2) 사용정산 회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.
- 다. "계약상대자"는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창고에 항상 안전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도로 "경북권역재활병원"의 지시가 있을 경우 (7)일 이내 지시된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13. 의약품 또는 진료재료의 경우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아래 각 목과 같이 조정할 수 있으며, "계약상대자"는 이에 대하여 승낙·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"경북권역재활병원"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보험상한금액 변동의 경우 변동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.
 - 나. 급여여부 변동으로 보험상한금액이 기존 계약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보험상한금액이하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.
- 14. "계약상대자"는 납품하는 물품의 최소단위("경북권역재활병원"과 상의후 변경가능)포장겉 면에 "경북권역재활병원"이 인식할 수 있는 Bar-code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15. 동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"경북권역재활병원"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16. 동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'경북권역재활병원 회계규정' 및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을 준용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

[2020, 7, 1, 시행]

- 제1조(목적)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북권역재활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·용역·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) ① 공사물품·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·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1항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북권역재활병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을 할 수 있다.
- 제3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북 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.
 - 1.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 - 2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하다.
 -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른다.
 - ③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·간접적으로 금품, 향응 등의 부당한이 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북권역재활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.
 - 1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 - 2.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,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 - 3.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- 제4조(계약해지 등) ① 입찰, 수의 시담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.
 - 1.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. 다만,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2.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. 다만, 계약대상물의 성격, 진도, 규모,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

제5조(기타사항) 계약상대업체의 임·직원(하도급업체 포함)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.